

제 1012 호

1984. 3.31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염보환
공보관 조남환
전화 : 725-7661-9
인쇄 :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화 : 725-6090

시보

차 례

- 조 례
제 1876 호 :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개정조례 3
- 규 칙
제 2061 호 : 서울특별시경찰공무원전보권위임규칙개정규칙 5
- 교육위원회규칙
제 279 호 : 서울특별시공, 사립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중
개정규칙 5
- 고 시
제 148 호 : 도시계획사업(학교) 시행허가 8

< 이 면 계 속 >

공											
람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1333

제 149 호 : 도시계획시설 (학교 및 공용의청사) 지적승인조사.....	9
제 150 호 : 서울도심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고시	9
제 151 호 : 도시계획사업 (도로 및 하수도) 실시계획인가.....	11
제 152 호 : 도시계획시설 (학교, 도로) 결정 및 변경결정.....	11
제 153 호 : 도시계획사업 (시장) 변경시행허가	12
제 154 호 :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고시.....	13
제 155 호 : 마포로제 1 구역제 7 지구재개발사업시행기간변경인가	16
제 156 호 : 무교구역제 12 지구재개발사업시행인가	16
제 157 호 : 도시계획시설 (문화시설) 지적승인	18
제 159 호 :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18
제 160 호 :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19

◎ 공 고

제 157 호 : 열사용기 자체제조업체행정처분	19
제 169 호 : 건설기술자면허추가갱신공고	20
제 170 호 : 도시계획사업시행 (도로) 공람공고	20
제 171 호 : 도시계획사업 (도로, 하수도) 실시계획공람공고	22
제 174 호 : 도시계획사업시행 (도로) 공람공고	23
제 176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완료	24
제 177 호 : 개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환경예정지변경 및 환지계획 공람공고	25
제 178 호 : 비료생산업허가사항변경공고	25
제 180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완료공고	26
제 181 호 : 마포로제 4 구역제 4-2 지구재개발사업시행을 위한 공람공고 ...	27
제 183 호 : 도시계획사업 (영락고교) 설계변경 및 준공처리.....	27
제 184 호 : 무기과열지구지정공고	28
제 185 호 : 무기과열지구지정공고	28
제 186 호 : 무기과열지구지정공고	29
제 187 호 : 무기과열지구지정공고	29

◎ 사 령

조 례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교육비 특별회계소속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4. 3. 31.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

◎ 서울특별시조례제 1876호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소속 회계관계공무원재정 보증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교육비 특별회계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 72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소속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를 말한다.

- 1. 징수관, 경리관, 물품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차, 분임

자 및 대리분임자

2. 제 1 호에 계기된자 이외의 회계관계 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자.

제 3 조 (재정보증) ①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한다)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에의 가입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인보증도 가능하다.

③제 2 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교육감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 4 조 (재정보증 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지출원, 출납공무원등 집행기관의 직제 해당하는 자는 12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 2. 세입징수관, 경리관등 명령기관의 직제 해당하는 자는 12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제 5 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 2 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

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결처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 4 조의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 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 6 조 (보험료의 지급) 교육감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한다.

제 7 조 (보증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교육감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 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 4 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동법제 5 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명령을 받게된 때 기타 보증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보증금액을 수입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등이 보증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당해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 8 조 (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교육감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

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 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 취급규정제 4 조제 2 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일 전에 보증보험증권 이외의 재정보증 수단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보증보험으로 대체하게 할 수 있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일 전에 회계관계공무원의 부담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이 조례를 적용하여 이 조례시행일 이후의 보험료는 예산에서 지출한다.

규 칙

서울특별시 경찰공무원전보권 위임규칙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4. 3. 27

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규칙제 2061 호

서울특별시경찰공무원전보권
위임규칙개정규칙

서울특별시 경찰공무원 전보권 위임
규칙을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
원 임용령 제 4 조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전보권의 일부를 경찰서장개
게 위임하므로서 능률적인 인사행
정을 꾀하고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위임범위) 경찰서 소속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 승급과 파장이
아닌 경감이하의 경찰공무원전보권
을 해당 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제 3 조 (보고) 이 규칙에 따라 경
찰서장이 행한 전보사항은 서울특
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교육위원회규칙

서울특별시 공·사립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중 개정규칙을 이
에 공포한다.

1984. 3. 22.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

◎ 교육규칙제 279 호

서울특별시공·사립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 공·사립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6 조제 2 항중 “체육중학교 및 회
육고등학교와, 서울직업학교”를 “체
육중학교, 체육고등학교 및 서울직업
학교, 아현직업학교”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를 별지와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8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정액표

(단위 : 원)

학교별	구분	년·기 (월)별	수업료	입학금	적용 지구	비고
		년				
대학		년	270,000	80,000	1급지	6개월을 1기로 정수함 1·2학년 3·4학년
		기	268,000			
고등학교 (공·사립·인 문·실업)		년	280,800	6,800	·	3개월을 1기로 정수함
		기	70,200			
각종 학교 (고)		년	252,400	6,100	·	·
		기	63,100			
고등기술학교 (고)		년	252,400	6,100	·	·
		기	63,100			
방송통신고등학교		년	45,640	2,940	·	6개월을 1기로 정수함
		기	22,820			
중학교 (공·사립)		년	163,200	5,700	·	3개월을 1기로 정수함
		기	40,800			
각종 학교 (중)	일반	년	163,200	5,700	·	·
		기	40,800			
	예능	년	201,600	5,700	·	·
		기	50,400			
특수 학교 (중)		년	163,200	5,700	·	·
		기	40,800			
기술 학교 (중)		년	146,800	3,100	·	·
		기	36,700			
고등공민학교		년	96,000	3,100	·	·
		월	8,000			
국민학교 (사립)		년	138,000	4,200	·	·
		월	11,500			
유치원		년	190,800	7,400	·	·
		월	15,900			

(별표 2)

공·사립학교 수업료 분할 징수표

(단위 : 원)

기 별 학 교 별	1 기 (3.1-5.31)		2 기 (6.1-8.31)		3 기 (9.1-11.30)		4 기 (12.1-익년2월)															
	대학 (공립)	135,000		134,000		135,000		134,000														
고등학교 (공·사 립 인문·실업)	70,200		70,200		70,200		70,200															
각종학교(교)	63,100		63,100		63,100		63,100															
고등기술학교(교)	63,100		63,100		63,100		63,100															
방송통신고등학교	22,820				22,820																	
중학교 (공·사립)	40,800		40,800		40,800		40,800															
각종학교 (중)	일 반	40,800		40,800		40,800		40,800														
	예 능	50,400		50,400		50,400		50,400														
특수학교(중)	40,800		40,800		40,800		40,800															
기술학교(중)	36,700		36,700		36,700		36,700															
기 별 학 교 별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월		11월		12월		익년1월	익년2월
	고등공민학교	8,000	8,000	8,000	8,000	8,000	8,000	8,000	8,000	8,000	8,000	8,000	8,000	8,000	8,000	8,000	8,000	8,000	8,000	8,000	8,000	8,000
국민학교 (사립)	11,500	11,500	11,500	11,500	11,500	11,500	11,500	11,500	11,500	11,500	11,500	11,500	11,500	11,500	11,500	11,500	11,500	11,500	11,500	11,500	11,500	11,500
유치원 (사립)	15,900	15,900	15,900	15,900	15,900	15,900	15,900	15,900	15,900	15,900	15,900	15,900	15,900	15,900	15,900	15,900	15,900	15,900	15,900	15,900	15,900	15,900

제 1012 호 시

표 1984.3.31

21-1

바. 이 표에서 "인문계"라 함은
실업계 이외의 학교 및 학과를
말하고 "실업계"라 함은 다음의
학과를 전공하는 학교 또는 학과
를 말한다.

가. 대학(대학원 및 초급 대학을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공업계,
농업계 및 수산계의 각 학과
(다만, 교육위원회 교육감이 정
하는 학과를 제외한다)와 기타
교육위원회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과

나. 중학교, 고등학교에 있어서는
공업계, 농업계 및 수산계의 각
학교 또는 학과와 기타 교육
위원회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
또는 학과

2. 이 표에서 1급지라함은 서울특
별시 전역을 말한다. 다만, 교육
위원회 교육감은 특수한 사정이
있는 학교에 대하여는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제 148 호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허가

1. 서울특별시고사 제 250호(81.

7.4)로 도시계획 시설(학교)결
정고시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 43호
(82.2.1)로 지적 승인된 도시
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조 등 시행령 제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학교)
시행허가 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대문구청 도시정비
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인다.

1984. 3. 26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 서대문
구 연희동 55-1

나. 사업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학교) 서울외국인학
교 교사숙소 증축

다. 사업시행면적 및 규모

- (1) 시행면적: 54800 ㎡
- (2) 건물면적: 273.53 ㎡
- (3) 건물층수: 기존지상 2층에 3층분 증축
- (4) 건물구조: 철근 콘크리트조
- (5) 건물향도: 교사숙소

라. 사업시행자주소성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연희동 55번지

재단법인 서울외국인학교 유지재
단 대표자 이사 오 인 수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1) 착수년월일: 1984. 3
- (2) 준공예정년월일: 1984. 9. 15

바. 위치 및 계획명면도: 별첨(도면생략)

사. 수용할 토지: 없음

아. 토지소유자: 재단법인 서울외국인학교

<p>◎ 서울특별시고시제 149 호</p> <p>도시계획시설 (학교 및 공용의 청사) 지적승인</p> <p>1. 서울특별시고시 제 48 호 (84.1.24) 로 변경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학교 및 공용의 청사) 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 동</p>	<p>법 시행령 제 6 조의 권한의 위임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적승인한다.</p> <p>2. 관계도서는 강동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4.3.26</p> <p style="text-align: right;">서울특별시장</p>
---	--

○ 도시계획시설 (학교 및 공용의 청사) 지적승인 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규모(㎡)	비고
기정	학교	강동구풍납동 388-6	33,564	(행정동, 법정동동일)
변경	학교	388-8	25,301	일부해제 (•)
신설	공용의 청사	388-6	8,264	(행정동, 법정동동일)

* 별첨 도면 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p>◎ 서울특별시고시제 150 호</p> <p>서울 도심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고시</p> <p>1. 서울 도심재개발사업 양동구역 및 마포로 제 1 구역내 일부 지구에 대한 사업계획을 도시재개발법 제 5 조, 제 8 조, 동법시행령 제 58 조 및 도시계획법 제 12 조 규정</p>	<p>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 고시한다.</p> <p>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재개발과 및 해당 구청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4.3.28</p> <p style="text-align: right;">서울특별시장</p>
--	--

가. 재개발사업계획 변경 결정 조서

(1) 양동구역

(가) 지구계획 변경 결정 조서

구분	지구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제 1 지구	중구남대문로 5 가 602 일대	3,883.4	
변경	"	"	3,823.1	지구면적축량결과

(나) 건축계획 변경결정조서							
구분	지구명	대지면적	건폐율	용적율	높이	배열	주 용 도
기정	제 1 지구	3,883.4 ㎡	34.1 %	783 %	22 / 3 층	별첨	사 무 실
변경	"	3,825.1	29.3 %	596.53 %	20 / 5 층	"	업무, 판매 및 근린 생활시설
(2) 마포로제 1 구역							
(가) 지구계획 변경결정 조서							
구분	지구명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제 1 지구	마포구마포동 35-1		1,723 ㎡	지구면적측량결과		
변경	"	"		1,654 "			
기정	제 9 지구	마포구도화동 39-5 일대		13,431 "	지구면적측량결과		
변경	제 9-1 "	"		10,582.2 "			
	제 9-2 "	" 39-6 "		3,306.5 "	지구면적측량결과		
기정	제 30 "	마포구도화동 292-26		1,830 "			
변경	"	"		1,895 "			
(나) 건축계획 변경 결정 조서							
구분	지구명	대지면적	건폐율	용적율	높이	배열	주 용 도
기정	제 1 지구	1,723 ㎡	38 %	450 %	10 / 2 층	별첨	업무시설
변경	"	1,654 "	46 "	682.88 "	15 / 4	"	"
기정	제 9 지구	13,431 "	37 "	670 "	15 / 3	"	업무, 판매, 숙박시설
변경	제 9-1 "	10,582.2 "	39.4 "	489.5 "	34 / 5	"	호텔 및 부대시설 (판매)
	제 9-2 "	3,306.5 "	40.7 "	109.3 "	4 / 3	"	업무시설
기정	제 30 "	1,830 "	"	670 "	15 / 3	"	"
변경	"	1,895 "	33.95 "	469.6 "	15 / 4	"	업무 및 근린생활시설
나. 관계 도면 : 별첨 (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151 호

도시계획사업 (도로및하수도)
실시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 1-4 호 (83.3.9.) 및 동고시 제 192 호 (83.4.4) 로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된 다음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동시행령 제 6 조에 의거 실시 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강서구청 토목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4.3.28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시 강서구 목동 123 의 1-124 의 28

나. 사업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도로 (도로 3 류) 및 하수도

다. 사업시행자 : 강서구청장

라. 사업규모 : 도로 B = 6 m L = 70 m
하수도 D = 600 mm L = 70 m

마. 사업기간
사업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1 년간

바. 토계조서
지번, 지목 및 소유권명세서 (별첨)

사. 토지보상계획
사업시행지내 토지는 토지계획법 제 29 조, 제 30 조 및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 법령, 토지수용 법령에 의거 사업기간 동안에 감정가격에 의하여 협의보상 또는 수용한다.

토 지 조 서

소재지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주소성명		비고
				관	인주소성명	
목동 123-1	대지	14㎡	14㎡	목동 550 번지왕재아파트	한명희	
목동 124-28	도로	357㎡	357	6 동 205 호	.	

◎ 서울특별시고시제 152 호

도시계획시설 (학교, 도로)
결정및변경결정

1. 당서관내 도시계획시설 (학교, 도로) 을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동시행령 제 6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 및 변경결정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설계획과와 관할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4.3.29
서울특별시장

가. 학교변경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규모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학교 (봉천중)	관악구봉천동 1647 일대	16,112	감) 3,599.10	12,512.90	2개교부 지조성및 일부해제
	학교 (봉천여고)	관악구봉천동산 2 일대	14,638	증) 2,488	17,126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나. 도로결정 및 변경조서

구분	등급	류별	폭원 (m)	연장(m)	기정	총점	비고
기정	소로	2	6	200	봉천 646-38	봉천동산 2-1	폐지
변경	"	2	6	0	"	"	
신설	"	2	6	40	봉천 1646-38	봉천 174-2	
"	"	2	6	100	"	" 174-13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153 호

도시계획사업 (시장)
변경시행허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 586 호 (83.11.7) 로 도시계획사업 (시장) 시행허가된 동작구 상도동 213-1 일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허가 변경요청이 있어 이를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동법시행령 제 6 조의 권한 위임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 (시장) 시행허가 변경하고 고시한다.

2. 관계서류는 동작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4.3.30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지 : 동작구 상도동 213-1 의 4 필

나. 사업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소매시장) 시행

다. 사업시행면적 : 3,992 ㎡ → 3,192 ㎡ (추가 200 ㎡)

라. 시설연면적 : 2,451 ㎡ → 3,451.4 ㎡ (증 1,000.4 ㎡)

<p>라. 사업시행자 강남구 방배본동 756 의 3 호 (주) 일호유통 대표이사 김 옥</p> <p>바.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착수 : 83.9.5 준공예정일 : 당초 84.3.30 변경 84.9.30</p> <p>사.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별첨생략</p> <p>아. 위치도, 계획평면도 : 별첨생략</p> <p>◎ 서울특별시 고시제 154 호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고시</p> <p>건설부고시 제 131 호 (76.8.21) 로</p>	<p>아파트지구로 지정된 서울특별시 용 산구 이촌 제 1 동 및 서빙고동 일 대의 서빙고 아파트지구에 대하여 주 택건설촉진법 제 20 조 제 2 항의 규 정에 따라 개발기본계획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4. 3. 30 서울특별시</p> <p>1. 지구개발계획의 명칭 : 서빙고 아 파트지구</p> <p>2. 개발대상지구의 위치 및 면적 위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제 1 동일대 및 서빙고동일대 면적 : 814,000 m²</p> <p>3. 지구개발계획의 개요</p>		
토 지 이 용 계 획 서			
1. 지구면적표			
(단위 : m ²)			
계	1 주 구	2 주 구	3 주 구
814,000	352,867	298,112	163,021
2. 토지이용 총괄표			
구 분	면 적 (m ²)	%	비 고
계	814,000	100	
주 택 용 지	646,484.1	79.4	
지 구 중 심	8,486.3	1.0	
주 구 중 심	25,644.6	3.3	
다 교 용 지	42,363.3	5.2	
공 원 용 지	30,243.7	3.7	
도 로 용 지	59,778.0	7.4	

3. 주구별 토지이용 계획			
제 1 주구 토지이용 계획			
구 분	면 적 (㎡)	%	비 고
주 구 면 적	352,867	100	
치 구 중 심	8,486.3	2.4	
주 구 중 심	11,064.7	3.1	
주 택 용 지	303,383.2	86.0	
공 원 용 지	1,657.8	0.5	
도 로 용 지	28,275	8.0	
제 2 주구 토지이용 계획			
구 분	면 적 (㎡)	%	비 고
주 구 면 적	298,112	100	
주 구 중 심	7,754.9	2.6	
주 택 용 지	229,138.9	76.9	
학 교 용 지	42,363.3	14.1	
공 원 용 지	1,736.9	0.6	
도 로 용 지	17,118	5.7	
제 3 주구 토지이용 계획			
구 분	면 적 (㎡)	%	비 고
주 구 면 적	163,021	100	
주 구 중 심	7,825	4.8	
주 택 용 지	113,962	70.8	
공 원 용 지	26,849	16.4	도시계획시설
도 로 용 지	14,385	8.8	
4. 가로망 계획		대로 2 류, 대로 3 류, 중로 1 류	
○ 계획도로		○ 주차장	
· 간선도로 (도시계획도로) : 광로,		· 주구별 개발 시행 계획에 따	
		라 단계별 확정	

<p>0. 도로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변도로 및 3주구 주택용지에 접한 도로 : 종로 1류 (20m) 2주구와 3주구에 접한 도로 : <p>5. 건축규제의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0. 용도규제 계획 	<p>광로 (40 m)</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하철도로 및 고속철도 지구내 동서로 가로질르는 도로 : 대로 3류 (25 m)
--	--

구 분	건 축 범 위	비 고
지구 중심	근린생활시설, 근린공공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교육 및 연구시설 (학교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전시시설, 운동시설	
주구 중심	근린생활시설, 근린공공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종합병원제외), 교육 및 연구시설 (학교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주택 용지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운동시설 (건축물을 수반하는 운동시설은 제외), 유치원, 닥아소, 경노당, 공동주택 관리용시설, 공급처리시설	
학교 용지	학교시설	
공원 용지	근린공원시설	
도로 용지	도로시설	

0. 건폐율 및 건축물 높이 규제 계획

구 분	건 폐 율	건 물 높 이	비 고
연립주택	30% 이하	3 층이하	
저층 아파트	25% "	4 층이상 5 층이하	
고층 "	20% "	6 층이상	
기타 건축물	50% "	5 층이하	

6. 기존건축물 처리계획

<p>본 기본계획수립 당시 지구일부가 개발된 기존건축물은 아파트지구 개발</p>	<p>기본계획수립에 관한 규정 부칙 제 2조에 의거 본기본계획에 맞지않는 경우라도 이를 개발된 것으로 보아</p>
--	---

현용도를 인정

7. 지구개발기본계획도의 비차관서 및 열람방법

비치부서 : 서울특별시 건설관리국 주택기획과

방 법 : 개별방문 열람

◎서울특별시고시제 155호

마포로 제 1구역 제 7 지구
재개발사업 시행기간변경인가

1. 서울시고시 제 341 호 (81.9.23)로 시행인가된 마포로 제 1구역 제 7 지구 재개발사업 시행기간을 도시재개발법 제 12 조 및 제 16 조 동시행령 제 20 조 제 2 항 2 호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인가하고 이를 고시한다.

1984.3.30

서울특별시장

가. 변경내용

1) 사업시행기간

당 초 : '81.9.23-'84.3.30

변 경 : '81.9.23-'84.6.30

변경사유 : 공공시설지역 지장물 철거지역에 따른 시행기간 연장

◎서울특별시고시제 156호

무교구역 제 12 지구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1. 건설부고시 제367호 (73.9.6)로 재개발구역지정되고 동고시 제 329 호 (81.8.27)로 사업계획 결정된 무교구역 제 12 지구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 8 조, 제 12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58 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재개발사업 시행인가하고 동법 제 16 조 및 동법시행령 제 21 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1984.3.30

서울특별시장

가. 인가내용

(1) 재개발사업의 명칭 : 무교구역 제 12 지구 재개발사업

(2) 시행구역 : 중구태평로 1 가 18, 18-1, 19, 19-1

중구무교동 87 (제 5 필지)

(3) 시행면적 : 4,082.8 ㎡

(4) 시행자 : 동산토건(주) 대표 오세정

(5) 주된사무소의 소재지 : 영등포구 양평동 5 가 106-1

(6) 시행기간 : 84.3.30-87.3.31

(7) 건축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면적 : 3,529.2 m² ○ 건축면적 : 1,220 m² ○ 연면적 : 30,219 m² ○ 층 수 : 지상 18층, 지하 3층 ○ 주 용 도 : 업무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축물 의 명세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별첨 (9) 사업시행계획서: 서울특별시공고제 95호 (84.2.25) 내용과 동일 (10) 규 약: 별첨(생략)
---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가. 토 지

지 번	지 목	지 적 (m ²)	시행면 적 (m ²)	소유자주소성명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관계인주소성명	
태평로1가18	대	3,362	2,851.5	영등포구양평동5가106-1 동산토건(주)외1인	근저당
19-1		2.6	2.6	중구남대문로1가14 조흥은행 중구올지로2가181 한국외환은행	
19		981.8	981.8	영등포구양평동5가106-1 동산토건(주)외1인	
18-1		2.6	2.6	중구남대문로1가14 조흥은행 중구올지로2가181 한국외환은행	
무교동87		244.6	244.3	중구태평로1가19 동양화재해상보험	
계			4,082.8	간남구압구정동1-5 한양아파트42-1105 김일남외9인	

나. 건 물

지 번	용 도	구 조	면 적 (m ²)	소유자주소성명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관계인주소성명	
태평로1가18	도서관	철근콘크리트평우	1,621.48	영등포구양평동5가106-1 동산토건(주)외1인	근저당
				중구남대문로1가14 조흥은행	
				중구올지로2가181 한국외환은행	

지 번	용 도	구 조	면 적 (㎡)	소 유 차 주 소 성 명	소 유 권 이 외 의 권 리 명 세
				관 계 인 주 소 성 명	
태평로1가 18	사무실	철근콘크리트스라브	2,774.92	영등포구양평동 5 가 106-1 동산토건(주)의 1인	근저당
" 19	영역	목조와즙	2,369.05	중구남대문로1가 14 조흥은행 중구올지로 2 가 181 한국의환은행 중구태평로1가 19 동양화재해상보험	
무교동 87	주택	"	105.79	강남구압구정동 1-5 박무신 한양아파트 42-1105	

◎ 서울특별시고시제 157 호

도시계획시설 (문화시설) 지적승인

1. 당시 관내 도시계획시설 (문화시설) 을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 문화시설 지적승인 조서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 및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4.3.30

서울특별시장

구 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	비 고
신 설	문화시설	강남구서초동산 130-6일대	193,943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159 호

민영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

주택건설 촉진법 제 33 조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

고 동법 시행령 제 32 조 5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한다.

1984.3.30

서울특별시장

<p style="text-align: center;">다 음</p> <p>1. 사업명 : 민영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 2. 사업주체 : 동대문구 중화동 284-11 삼익건설사업 문정열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규모 가. 위치 : 강서구 신월동 산 113 번지의 5호의 3필지 나. 면적 : 11,829㎡ 다. 규모 : 아파트 10층 3동 200세대 부대, 복리시설 4. 사업시행기간 : 84.3-85.3.31</p> <p>◎서울특별시 고시제 160호</p> <p>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p> <p>주택건설촉진법 제 33조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 32조 5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4.3.28 서울특별시장</p> <p style="text-align: center;">다 음</p>	<p>1. 사업명 : 민영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 2. 사업주체 : 강서구 신월동 66-2 주식회사 대경주택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규모 가. 위치 : 강서구 신월동 산 132번지의 29호, 163호 나. 면적 : 5142.70㎡ 다. 규모 : 연립주택 3층 3동 87세대 부대, 복리시설 4. 사업시행기간 : 84.4.1-84.10.31</p>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공 고</p> </div> <p>◎서울특별시공고제 157호</p> <p>열사용기자재제조업체행정처분</p> <p>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2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열사용기자재제조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였음을 동법시행규칙 제 17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4.3.24 서울특별시장</p>
---	---

허가번호	상 호	대표자	소재지	위 반 내 용	처분내역	적 용 법 규
108	금화기계	허영하	신도림 291-189	무단휴폐업(소재불명) 및 법정정보고지제출	허가취소	에너지이용합리화법 23조 1항
39	금강보일러	유세현	독산 158-1(나)			

허가 번호	상 호	대 표 자	소 재 지	위 반 내 용	처 분 내 역	적 용 범 규
55	새서울 공업사	공오장	시흥548-6	무단류폐업(소재불명)) 및 법정보고미제출	허가 취소	에너지이용합리화 법 23조 1항
118	평화보일러	송재수	고척17-12	"	"	"

◎서울특별시공고제 169호

건설기술자면허 추가갱신공고

건설업법 제 17조제 4항의 규정에 의
한 건설기술자면허 추가갱신 신청요령
을 동법시행령 제 33조제 4항의 규정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84.3.31

서울특별시장

다 음

가. 면허 추가갱신대상 : 건설업법 제 17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자 면허를 받
은자로서 80.11.10-81.12.31간 건
설부에서 실시한 면허일제 갱신시 면
허갱신을 못한자중 서울특별시 관내
거주자

나. 신청서 접수기간 : 84.5.1-84.6.30
(2개월간)

다. 신청서교부 및 접수처 : 서울특별시
시관과

라.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접수처교부)

- 신원증명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 증명사진 2매
 - 수수료 : 서울특별시수입증지 2,000원
- 마. 유의 사항 : 신상변동신고 불이행자
는 건설업법 제 20조, 동법시행령 제
35조, 동법시행규칙제 27조제 2항의 규정에 의
한 신상변동 신고를 필한후 신청하여야 한다.
- 바. 기타 : 상세한 사항은 당시 건설행
정과 (교환 725-7661-9)에 문의하기바란다.

◎서울특별시공고제 170호

도시계획사업시행 (도로)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제 207호(73.12) 로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된 신림동
356-2 ~ 360-6 간 도로에 대하여
도로개설공사를 위한 도시계획사업
을 시행코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한다.

2.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할 것이나 미
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
음한다.

3. 관계도서는 관악구청 토목과에 비치하고 토지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4.3.27
서울특별시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 6동 356-2 ~ 360-6 간

나. 사업의종류 및 경칭 : 도시계획사업 (신림 6동 356-2 ~ 360-6 간 도로개설) 시행

다. 사업의 규모 : B = 6 m L = 160 m

라.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마. 사업의착수 및 준공예정일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12.31 까지

바. 수용 또는 사용할토지, 건물소재지지번, 지목 소유권 권리형태 (별첨)

사. 토지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조 3항의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별첨

아.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 일 간

자. 기타사항 : 의견 및 상세한 사항은 상기 공람장소에 제출 또는 문의하기 바란다.

토 지 조 서

공사명 : 신림 6동 382-360 간 도로개설공사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소유자 주소 성명		소유권이외 권리종류 및 내외	비고
			관	제인주소성명		
신림동 365-24	도	7	신림동 365-3	최보물		
365-4	"	400	대구 남구 대경동 2132	이한녕		
365-23	"	60	경북달성농공남동 656	백관준		
363-25	대	2	신림동 363-7	정균택		
363-18	답	40	안양시 안양리 102	한극이		
363-6	도	28	신림동 363-6	강대남		
362-2	"	407	노량진동 302-50	유창연		
361-74	"	37	신림동 351	윤한섭		
361-58	답	248	"	"		
361-75	도	43	"	"		
361-77	"	4	"	"		
361-76	"	36	"	"		
360-1	"	68	"	"		
360-7	"	43	"	"		

<p>◎서울특별시공고제 171호</p> <p>도시계획사업(도로, 하수도) 실시계획 공람공고</p> <p>1. 서울시고시제 48호(74.4.20)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마천동 128주변의 2개소포장공사의 도시계획사업(도로, 하수도) 실시 인가를 받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 25 조 2 의 1항 및 동법시행령 제 27 조 2 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일 반의 공람에 공고한다.</p> <p>2.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 할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공고로 가름한다.</p> <p>가. 공람장소 : 강동구청토목과 나. 공람기간 : 84.3.29-84.4.12</p>	<p>1984.3.29</p> <p>서울특별시장</p> <p>공 랑 개 요</p> <p>1. 사업명 : 마천동 128주변의 2개소 (포장공사)</p> <p>2. 사업시행지 : 마천동 128-35-128-45 " 128-43-128-34 " 128-22-128-72</p> <p>3. 사업규모 : B=4-8m L=246m 콘크리트포장 10.5a</p> <p>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p> <p>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1년</p> <p>6. 기타사항 : 의견 및 상세한 사항은 상기공람장소에서 제출 문의바란다.</p>
---	--

토 지 조 서

연 번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주 소 성 경	비 교
1	마천동 128-25	전	403	강동구마천동 159-5 김운선	
2	" 128-74	임	449	성북구신장위동 230-156 이철립 외 2인	
3	" 128-39	전	364	강동구마천동 159-5 김운선	
계			1,216		

○서울특별시공고제 174 호

도시계획사업시행 (도로)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50 호 (82.2.3) 로 시설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 277 호 (82.7.21) 로 지적승인된 봉천동 당곡중 (당곡교) 학교 진입로 개설공사를 위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코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 2 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한다.
2.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 할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공고로 갈음한다.
3. 관계도서는 관악구청 토목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4.3.28

서울특별시

도 시 조 서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산 113 의 40-산 132 의 1 및 봉천동 675-산 148 의 1 간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봉천동 당곡중 (당곡교) 학교 진입로 개설) 시행

다. 사업규모 : B = 6 - 8 m , L = 376 m

라.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관악구청장)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사업시행인가 일로부터 84.12.31 까지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지목 및 소유권 권리명세 : 별첨

사. 토지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별첨

아.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자. 기타사항 : 의견 및 상세한 사항은 상기공람장소에 제출 또는 문의하기바란다

소재지번호	지 목	면적 (㎡)	소 유 자 주 소 성 명		비고
봉천동 686-33	대	41	강남구압구정동 297 현대아파트 108 동 304 호	이성범	
" 675-20	"	17	봉천동 675-18	노중열	별첨
" 686-30	"	13	강남구압구정동 297 현대아파트 108 동 304 호	이성범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주소	성명	비고
봉천동 675-30	대	7	용산구이태원동 96-30	김영석	
" 686-31	"	61	강남구압구정동 297 현대아파트 108 동 304 호	이성범	
" 676-12	"	16	"	"	
" 676-13	"	25	"	"	
" 산 148-3	임	99	강남구삼성동 135-31	손병철외 2인	
" 산 148-4	"	498	"	"	
" 산 113-39	"	171	봉천동 672-1	백우선 외	
" 산 113-40	"	270	"	"	
" 673-221	도	142	봉천동 673-72	이호윤외 1인	
" 133-6	임	약 300	용산구한강로 2가 181	장원산업(주)	
" 673-222	도	17	송로구안국동 40	재단법인 선학원의외 1인	
" 산 133-9	임	80	용산구한강로 2가 181	장원산업사	
" 산 132-1	"	약 310	강남구논현동 150-11 연립 4동 203	김희배	

○서울특별시공고제 176 호

도시계획사업 (학교) 완료

1. 서울특별시 제 446 호 (82.11.8) 호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방우동 220 번지 일대에 대하여 증축된 건축물의 준공이 인정되어 도시계획법 제 85 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 6 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 (학교) 완료하였기 이를 공고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4.3.28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방우동 220 번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학교) 영란여중, 상교교시설확충공사

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토 지 (면적) : 35,452.40 ㎡

○ 건 물 (")

기존-건축면적 : 2,721.05 ㎡

연 면 적 : 13,940.70 ㎡

증축-건축면적 : -

연 면 적 : 810 ㎡

(규모) 구조-철근콘크리트

층수 : 5 층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대현동 11-1

학교법인 이과학당 이사장 김영의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년월일

- 착공년월일 : 82.12.17
- 준공년월일 : 84. 3. 5
- 사업완료도면 : 별첨 (생략)

○서울특별시공고제 177 호

개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환지대
정지변경및환지계획공람공고

1. 사업시행중인 개포토지구획 정리 사업지구 일부토지에 대하여 환지 계획변경 (10 부락내 양재동 50 의 29 의 2 필지) 및 환지계획이 수립되어 토지구획 정리사업법 제 47 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계획인가 코허 동 법 제 33 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 계획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에게 공고일로 부터 14 일간 공람 한다.

2. 관계도서는 다음 장소에 비치하여 보이고 있으니 의견이 있을시 는 공람기간내에 이의 신청을 하여 수시기 바라며, 토지소유자에게 는 개별통지할 것이나 미수경된 토 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이 공고로 갈음한다.

1984. 3. 28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명 : 개포토지구획정리사업

나. 시행면적 : 271,000 ㎡ (82,000 평)

다. 시행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개포 동, 양재동, 염곡동, 포이동 일대

라. 특기사항

(1) 환지계획은 평가식 환지설계방 으로 수립

(2) 성리전, 후 평가는 실시계획승 인일을 평가 시점으로 함.

(3) 환지대상 면적은 평가 가격이 일반토지 198 ㎡, 접물이 없는 내지는 89 ㎡ 규모 이상으로 하 고 기준면적 이하의 토지는 보 류지에 권리면적을 산정하여 금 전 청산,

(4) 가능한 범위치 환지를 원칙으 로 하되 공공용지 설치용 토지 이용 계획상 부적합하거나 최저 기준 면적에 미달되는 토지는 환 전토지 여건을 감안하여 미환지 라.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과 (725-6290)

○서울특별시공고제 178 호

비료생산업허가사항변경공고

비료관리법 제 11 조 제 4 항의 규정

<p>에 의하여 신고된 비료생산업 허가 변경 사항을 동법시행령 제 7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1984.3.29</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 특별 시장</p>	<p>1. 허가번호 : 제 1 - 2 호</p> <p>2. 성 명 : 제일제당(주) 대표이사 이 종 규 주소 : 서울도봉구수유동 472-72 제조장소재지 : 서울강서구가양동 92</p> <p>3. 상 호 : 제일제당 주식회사</p> <p>4. 변경년월일 : 1984.3.29</p> <p>5. 변경사항</p>
---	--

항 목	변경 전	변경 후	변 경 사 유
대표자 경약변경	이 수 빈	이 종 규	전임대표 사임

<p>◎서울특별시공고제 180 호</p> <p>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완료공고</p> <p>1. 서울시고시 제 333 호 (82.8.19) 로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되고 동고시 제 95 호 (83.2.18) 및 동고시 제 722 호 (83.12.30) 로 허가변경된 지역에 대하여 공사완료 되었기도 시계획법 제 57 조의 2 제 85 조 및 동법시행령 제 6 조의 권현위임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p> <p>2. 관계도서는 성동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p> <p style="text-align: center;">1984. 3.30</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 특별 시장</p>	<p>가. 사업의 시행지 : 성동구중곡동산 3-18 호 일대</p> <p>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학교) 대원 중 · 고등학교 시설확충사업</p> <p>다. 사업의 규모 시행면적 - 23,735.36 ㎡ 시 설 - 건물 1 동 5 층 연 건 평 - 6,336 ㎡ (당초 6,421.5㎡)</p> <p>라. 사업시행자 : 학교법인 대원학원 이사장 이 경 호</p> <p>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일 착 수 : 82. 8.20 준 공 : 84. 3.29</p> <p>바. 위치 및 계획평면도면 : 별첨생략 사. 준공도면 : 별첨생략</p> <p>아. 기타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성동구청 도시정비과 (445-8705) 로 문의바란다.</p>
---	---

◎ 서울특별시공고제 181 호

마포로제 4구역제 4-2 지구재개발사업
시행을위한공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 345 호 (79.9.21)로 재개발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412 호 (81.11.13) 제 73 호 (84.2.11)로 사업계획결정 및 변경결정된 마포로제 4 구역 제 4-2 지구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인 오대양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도시재개발법 제 12 조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이 있어 동법제 15 조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공고일로부터 30 일간 일반인에게 보인다.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재개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게는 신문공고로서 통지에 갈음할 것이며,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내에 재개발사업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1984.3.30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의 명칭 : 마포로제 4 구역제 1-2 지구 재개발사업

나. 시행구역 : 서대문구 충정로 3가 135-1 외 61 필지 (제 62 필)

다. 시행면적 : 4,432㎡

대지면적 : 3,354.1㎡

공공시설면적 : 1,077.9㎡

라. 공람내용 : 사업시행계획서 및 규약

마. 사업시행예정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13 번지 오대양종합건설(주) 대표이사 강정응

바. 공람기간 : 1984.3.30-1984.4.28 (30일간)

사.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도시계획국 재개발과 (725-7661~9)

◎ 서울특별시공고제 183 호

도시계획사업 (영락고교)
설계변경및준공처리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511 호 (79.12.31) 및 동고시 제 32 호 (80.2.1)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승인 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 82 호 (80.3.3)로 도시계획사업 (영락고교) 시행허가한 관악구 봉천동 산 174-174 외 29 필지 토지에 대한

<p>여 도시계획법 제 25 조, 동법 제 57 조의 2, 동법 85 조, 동법시행령 제 66 조의 3, 동법시행령 제 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 및 동시 준공처리하고 이를 공고한다.</p> <p>2. 관계도서는 판악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4.3.30 서울특별시장</p>	<p>함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고 동조 제 2 함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4.3.30 서울특별시장</p> <p style="text-align: center;">다 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정구역: 강남구 개포동 800 번지의 135 필지 2. 면적: 32,107.2㎡ 3. 아파트명: 개포우성 3 차 아파트 4. 규모: 아파트 15 층 5 동 405 세대 5. 사업주체: (주)우성건설 대표 최승진
<p>가. 사업시행지: 판악구 봉천동산 174-174 외 29 필지</p> <p>나. 사업명: 도시계획사업 (영락교교)</p> <p>다. 사업시행면적: 11,396.2㎡</p> <p>라. 준공면적: 11,396.2㎡ (지적측량성과도에 의함)</p> <p>마.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o 주소: 강남구 반포동 254 번지 신반포 3 지구아파트 37 동 최창근</p> <p>바. 사업시행허가일: 80.3.3</p> <p>사. 준공내용: 별첨 설계도서와 같음 * 설계도서 게재 생략</p>	<p>◎서울특별시공고제 185 호</p> <p style="text-align: center;">투기과열지구지정공고</p> <p>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 13 조의 2, 제 1 함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고 동조 제 2 함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3.3.31 서울특별시장</p>
<p>◎서울특별시공고제 184 호</p> <p style="text-align: center;">투기과열지구지정공고</p> <p>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의 2, 제 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정구역: 서울특별시 강동구 가락동 1-2 외 276 필지 2. 면적: 45,638.11㎡

- 3. 아파트명 : 가락 2 차 현대아파트
- 4. 규모 : 아파트 14 층 8 동 560 세대
- 5. 사업주체 : 한국도시개발(주)
대표 최수일

◎서울특별시공고제 186 호

투기과열지구지정공고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 13 조의 2,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고 동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한다.

1984.3.31

서울특별시장

다 음

- 1. 지정구역 : 서울특별시 강동구 가락동산 61-1 외 12 필지
- 2. 면적 : 17,335.30 m²
- 3. 아파트명 : 우창 가락아파트
- 4. 규모 : 아파트 12 층 3 동 192 세대
- 5. 사업주체 : 우창건설(주)
대표 이민하, 김덕기

◎서울특별시공고제 187 호

투기과열지구지정공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13 조의 2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고 동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한다.

1984.3.31

서울특별시장

다 음

- 1. 지정구역 : 서울특별시 강동구 방이동 294 외 92 필지
- 2. 면적 : 35,194.9 m²
- 3. 아파트명 : 가락동 상아아파트
- 4. 규모 : 아파트 15 층 6 동 480 세대
- 5. 사업주체 : 대림산업(주) 대표 이준용

사 경

◎ 1984 년 3 월 21

령 제 116 호

총 무 처
행정사무관시보

김 상 인

서울특별시 은무를 명함.

대 봉 령

<p>내무국근무를 명함.</p> <p style="text-align: right;">서울특별시장</p> <p style="text-align: center;">총 무 처 안 승 일</p> <p style="text-align: center;">행정사무관시보</p> <p>서울특별시 근무를 명함.</p> <p style="text-align: right;">대 통 령</p> <p>내무국 근무를 명함. 서울특별시장</p>	<p>◎ 1984 년 3 월 27</p> <p style="text-align: right;">령제 117 호</p> <p>상하수국하수과하수과징계장</p> <p>지 방 행 정 사 무 관 이 증 식</p> <p>원에 의하여 그 직을 명함.</p>
---	--

◎ 1984 년 3 월 29

령제 118 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라 진 구	심사분석담당관심사분석 1계장	강서구기획감사과장	지방행정사무관
김 봉 현	심사분석 2계장	서대문구위생과장	

◎ 1984 년 3 월 27

령제 119 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조 관 호	내무국총무과 근무를 명함	강동구총무과	지방행정주사보

령제 120 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강 병 섭	복직을 명함	내 무 국	지방행정사무관
박 성 백			
변 영 균			지방토목기사

◎ 1984 년 3 월 29		령계 121 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김 상 균	급수과파전 근무를해제함.	은평구	지방토목기사
◎ 1984 년 3 월 14		령계 122 호	령계 124 호
주 택 개 량 과 지 방 서 기 관		노 흥 균	김 기 한
1984 년 3 월 13 일 사망으로 인하여 그직을 면함.		지방별정직 7급상당 (고압가스관리기사)에 임함. 10 호봉을 급함. 마포구 근무를 명함.	
◎ 1984 년 4 월 1		령계 123 호	
전 자 계 산 소 지방별정직 6급상당		엄 해 주	오 세 흥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지방별정직 7급상당 (고압가스관리기사)에 임함. 1 호봉을 급함. 영등포수원지사무소 근무를 명함.	
서울 특별시 강			